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채용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1월 26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43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채용 규칙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(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.
- ② 부정합격자를 임용 취소할 수 있도록 채용 내정자에게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